

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1996· 3· 1 조례 제 8호
개정 1997· 3· 27 조례 제 186호
개정 1998· 10· 14 조례 제 244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)
개정 2001· 3· 7 조례 제 364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개정 2001· 11· 28 조례 제 392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개정 2006· 11· 16 조례 제 640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개정 2007· 7· 2 조례 제 664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개정 2008· 7· 25 조례 제 720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개정 2009· 1· 12 조례 제 736호
(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)
개정 2009· 12· 10 조례 제 805호
일부개정 2013· 1· 11 조례 제 969호
(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)
일부개정 2013· 10· 1 조례 제1001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5· 9· 25 조례 제1148호
일부개정 2018· 3· 28 조례 제1378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20· 10· 7 조례 제1625호
일부개정 2023· 3· 6 조례 제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(이하 “결정”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· 9· 25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1997· 3· 27, 2015· 9· 25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1997·

3·27, 1998·10·14, 2001·3·7, 2001·11·28, 2006·11·16, 2008·7·25, 2009·12·10, 2013·10·1, 2018·3·28, 2023·3·6>

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, 소장(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)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<개정 2009·12·10, 2015·9·25>

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⑤ 관계 직원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제3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
1.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20·10·7>
3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

[전문개정 2015·9·25]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삭제 2015·9·25>

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15·9·25>

⑦ 회의를 개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5·9·25>

② 간사는 정책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07·7·2, 2015·9·25>

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간사를 보좌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[제목개정 2015·9·25]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②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제8조(실비변상)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9·25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7·3·27 조례 제18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·10·14 조례 제244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**제3조** 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 <2001·3·7 조례 제36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1·11·28 조례 제392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6·11·16 조례 제64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7·7·2 조례 제664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담당”을 “정책기획담당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08·7·25 조례 제72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시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⑰ 까지 생략

부칙 <2009·1·12 조례 제720호,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③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 착수금의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

부칙 <2009·12·10 조례 제8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·1·11 조례 제969호,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」 중 제3조 중 “19호”를 “20호”로 하고, 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9.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

부칙 <2013·10·1 조례 제1001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<2015·9·25 조례 제114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20·10·7 조례 제162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

③ 「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④ 까지 생략